

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화물자동차의 대수	직접 소유		가맹점 소유	
가맹점 수	운송 가맹점		주선 가맹점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8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장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주사무소·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.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·종별·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차고지 설치 확인서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4.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5.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.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7.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